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별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별지 서식 중 작성내용의 구체화, 조문 자구 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완화(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1)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하고,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 이수일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2)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로 변경함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이력 관리 편의성 제고 및 교육이수기한 혼선을 방지하고,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차기 교육이수기한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방지할 것으

로 기대됨.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7조 제2·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산림기술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산림기술자 편의성 제고 기대됨.

다.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 1)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의 경우 산림사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벌점 부과기준의 모호성 해소함.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시화(안 제10조)

- 1)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처리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행정절차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체계의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 구체화(별지 제5호서식)

- 1)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에 자격번호, 종류·등급 및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오기 등으로 인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실적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 2)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조문 내 문구 자구 수정(안 제10조제1항제4호가목, 안 제11조제2항 제2호라목, 별지 제18호서식)

- 1)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의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 2)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조림·숲가꾸기·벌채”를 “조림, 숲가꾸기, 벌채”로 수정함.
- 3)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가목 중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 1)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처리절차에서 불필요한 절차인 “경력증명서 발급” 삭제함.
- 2)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의 기술경력에 “사업(용역)량” 기재란 추가함.
- 3)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에 계약·착수·완료 “연월”을 “연월일”까지 기재하도록 개선함.
- 4)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별점 총괄표에 “자격종류 및 등급(자격번호)” 기재란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격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을 “자격증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라목 중 “조림·숲가꾸기·벌채”를 “조림, 숲가꾸기, 벌채”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신규교육의 이수시기란 중 “날부터 1년”을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로 하고, 같은 호 정기교육의 이수시기란 중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를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로 하며, 같

은 표 비고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호의 정기교육의 “신규교육 이수기한”이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를 말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의 번호 2.5의 주요 부실내용란 중 “소홀”을 “소홀(산림사업시행업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번호 3.8의 주요 부실내용란 중 “소홀”을 “소홀(산림기술용역업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해야 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이수시기를 적용받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의 별점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점

을 부과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산림기술자는 이 규정에 따른 벌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부실 내용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격 종류 및 등급			
기재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자 자격증	수수료
수탁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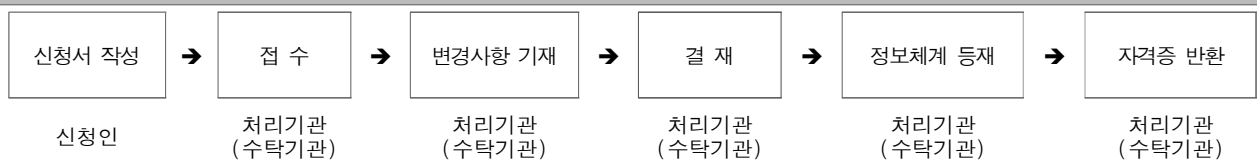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산림기술자 자격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근무처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직위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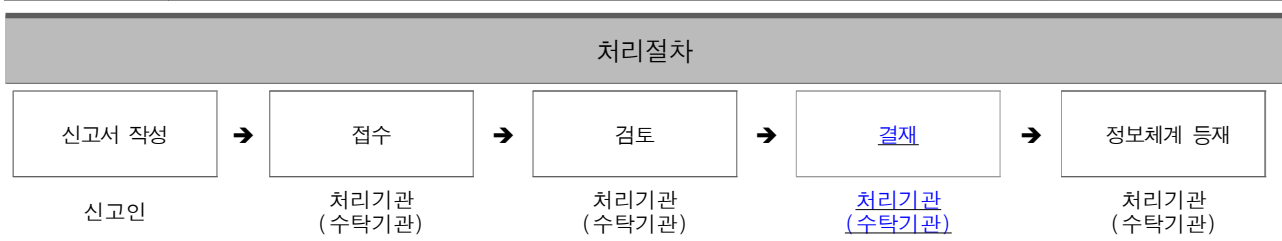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업종(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량 (km, m ² , m ³ , ha)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림사업 실적신고서(년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checkmark$ 표시를 합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1) 일련 번호	(2) 사업 구분	(3) 계약명	(4) 사업종	(5) 사업개소					(6) 발주청	(7) 입찰형태	(8) <u>계약</u>	(9) <u>착수</u>	(10) <u>완료</u>	(11) 사업규모		(12) 총사업금액							(13) 관급자재액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번지			<u>일자</u>	<u>일자</u>	<u>일자</u>			수량	단위	백 외	십 외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외	십 외	천 만	백 만	십 만

유의사항

1. (2) 사업구분은 시행,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3) 계약명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명을 적습니다.
 3. (4) 사업종은 조립, 숲가꾸기, 임도, 사방,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 산림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4. (7) 입찰형태는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11) 사업규모는 사업종류를 고려하여 ha, m², 개소, km 등으로 사업을 계약한 물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6. (12) 총사업금액은 관급자재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 1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생략)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u>자격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u> 첨부하여 자격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u>자격증을</u> ----- ----- -----.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u>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 ----- ----- ----- ----- -----

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
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
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
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 3. (생략)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나.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① (생
략)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재무상태표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
록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2. 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 략) 라.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 시도(<u>조립 · 숲가꾸기 · 벌</u> <u>채</u>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 업으로 한정한다) 마. ~ 사. (생 략) ③ · ④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u>조립, 숲가꾸기, 벌채</u> - ----- ----- 마. ~ 사.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